

• 21세기 미래문화도시 • 더불어 행복도시 • 사람중심 열린도시



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403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부록 제1100호 2019. 4. 22.(월)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-597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)1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-626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)12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-49호(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)18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-50호(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)19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-52호(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사항 변경)과 지형도면 고시)20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-53호(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3-2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)30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19 - 597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15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- 구에서 연수동 「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」 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(목적)
 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
- 조례안 제3조(적용범위)
 -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
- 조례안 제4조(사업내용) ※ 별표1
 -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

○ 조례안 제6조(운영의 위탁)

-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○ 조례안 제7조(수탁자선정)

-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·운영하고자 할 경우,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 선정

○ 조례안 제10조(위탁의 취소)

-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,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조례안 제12조(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)

-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
-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, 사업의 효과성, 시설관리실태, 회계감사, 이용자 만족도 조사,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갱신 가능

○ 조례안 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)

-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~15명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

○ 조례안 제14조(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)

-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고,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처 및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기준 명시

○ 조례안 제16조(시설의 안전점검)

-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

3. 의견제출

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6일(월)까
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 : 복
지정책과장,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
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(전화 : 749-7631, FAX : 749-7629)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사회복지관” 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.

제4조(사업내용)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사업대상)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2.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3.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
4.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·아동 및 청소년
5.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6조(운영의 위탁)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선정)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

력, 지역 간 균형분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제27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제8조(계약의 체결)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6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7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.

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·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
2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
3.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

4.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,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

제11조(위탁계약기간)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.

제12조(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)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8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, 사업의 효과성, 시설관리실태, 회계감사, 이용자 만족도 조사,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평가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,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, 신규 위탁은 공모하지 아니한다.

④ 위탁기간 중 제10조에 의해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,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,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
4.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)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.

1. 해당사업의 자체 중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

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.

제15조(운영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설의 안전점검)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·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, 시설의 보완 및 개수·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회복지관의 사업(제4조 관련)

기능	사업분야	사업 및 내용
사례 관리 기능	사례발굴	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
	사례개입	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
	서비스 연계	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, 의뢰
서비스 제공 기능	가족기능 강화	1. 가족관계증진사업: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·강화하는 사업 2. 가족기능보완사업: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,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. 가정문제해결·치료사업: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·치료·사회복귀 지원사업 4. 부양가족지원사업: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.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
	지역사회 보호	1. 급식서비스: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. 보건의료서비스: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·의료관련 서비스 3. 경제적지원: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. 일상생활 지원: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. 정서서비스: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

		6. 일시보호서비스: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·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 서비스 7. 재가복지봉사서비스: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, 노인, 소년·소녀가정,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,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
	교육문화	1. 아동·청소년 사회교육: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. 성인기능교실: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. 노인 여가·문화: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. 문화복지사업: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·오락프로그램,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,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
	자활지원 등 기타	1. 직업기능훈련: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. 취업알선: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. 직업능력개발: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·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. 그 밖의 특화사업
지역 조직화 기능	복지 네트워크 구축	지역 내 복지기관·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- 지역사회연계사업, 지역욕구조사, 실습지도
	주민 조직화	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,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- 주민복지증진사업, 주민조직화 사업, 주민교육
	자원 개발 및 관리	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,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- 자원봉사자 개발·관리, 후원자 개발·관리

[별표 2]

이용료 환불 기준(제14조 관련)

구분		환불유형	환불기준
천재지변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·중단		① 개시일 이전	-납부금액 전액 환불
		② 개시일 이후	-납부금액 중 이용중단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(일할 계산)
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·중단	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	① 개시일 이전	-납부금액 전액 환불
		② 이용 개시일 이후 - 이용기간의 1/3 경과 전 - 이용기간의 1/2 경과 전 - 이용기간의 1/2 이후	-납부금액의 2/3 해당액 환급 -납부금액의 1/2 해당액 환급 -미환불
	이용 기간이 1개월 초과	① 개시일 이전	-납부금액 전액 환불
		② 개시일 이후	-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 불 대상 이용료(이용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4월 19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1. 개정이유

- 연수구-연수구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휴무조항 등을 정비·보완하여 당직근무제도 개선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당직수당 조항 개정(안 제5조)
 -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가 불가능한 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 조항 신설
- 당직근무자 교대근무 조항 정비(안 제11조)
 - 현 당직근무 체계에 맞도록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. 4. 24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2층 총무과
- 연 락 처 : 전화 749-7165 FAX 749-7159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- 개정 규칙(안) : 붙임

[붙임] 개정 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숙직근무자의 휴무)”를 “(당직근무자의 휴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숙직근무자”를 “당직근무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지역의 치안상황”을 “상황”으로 하고, 제1호,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중 “전·후반 교대로”를 “교대근무로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<u>숙직</u> 근무자(재택근무자는 제외하 다)의 휴무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하게 할 수 있다.	제6조(<u>당직</u> 근무자의 휴무) <u>당직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다만,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</u> <u>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</u> <u>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, 공휴</u> <u>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</u> <u>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</u> <u>다.</u>
제8조(재택당직근무) ① 각급기 관의 장은 <u>당해</u>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 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.	제8조(재택당직근무) ①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교대근무) ----- ----- <u>다음 각</u>	제11조(교대근무) ----- ----- <u>일정한</u>

호에 의하여 전·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. 다만,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1. 일직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:00까지로 하고, 후반 근무시간은 13: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.

2. 숙직의 전반 근무시간은 20:00부터 익일 02: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02:00부터 07:00까지로 하며, 그 밖의 시간은 전·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.

제12조(당직근무자의 위치)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(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)에 위치하여야 하며, 전·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.

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. 다만,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2조(당직근무자의 위치)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(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)에 위치하여야 하며,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16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신규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289번길 11

도로명		관련지번	신규 도로명주소	비고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		
2018-04-13	능허대로 시작점에서 2890m떨어진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동춘1구역 3블럭 3롯트	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289번길 11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602, 760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4.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수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19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62

관련지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옥련동 352-13	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62	2019-4-19	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602, 7604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(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절차) 제2항에 의거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(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 등)을 폐지일로 하여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폐지고시를 합니다.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건물번호 부여 신청후,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사항 변경)과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-17번지 일원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341호(2009.11.09.)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09.14.)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 변경)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(☎032-749-861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22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 및 면적 - 변경없음

○ 정비구역 지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연수구 옥련동 271-17번지 일원	8,548.0	-	8,548.0	

3. 정비계획

1)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○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		8,548.0	-	8,548.0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8,548.0	-	8,548.0	100.0	

2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
① 도시계획시설(도로) - 변경없음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
결정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(㎞)	위 치	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㎞)			시점	종점				
기정	중로	2	144	15~18	국지 도로	282(43)	광로3-6	대로3-40	일반 도로	-	1991.7.15	-
기정	소로	2	11	8	국지 도로	434(9)	대로2-14	중로2-144	일반 도로	-	1991.7.15	-

※ ()는 구역내 도로연장,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

②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- 변경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①	주차장	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-4번지 일원	55.0	증)16.0	71.0	2009.11.09	무상 귀속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사유
①	주차장	◦ 주차장 면적변경 - 면적 : 55.0 → 71.0㎡(증16.0㎡)	◦ 주차 가능 대수(3대) 변경 없이 주차진입로 개선 및 보도연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

③ 도시계획시설(공원) - 변경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①	공원	소공원	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-3번지 일원	395.0	감)16	379.0	2009.11.09	무상 귀속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 원 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사유
①	공원	◦ 공원 면적변경 - 면적 : 395.0 → 379.0㎡(감16.0㎡)	◦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형화 및 면적 변경

3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- 변경

○ 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

4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결 정 구 분	구 역 구 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 고
	명 칭	면 적(㎡)		합계	존 치	개 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
기정	옥련대진빌라 주변구역	8,548.0	옥련동 271-17번지 일원	40	-	-	40	-	

5)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- 변경

■ 기정

구 분	명칭	위 치		규모(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)			비고
	류번-번호	시점	종점	면적(㎡)	폭원(m)	연장(m)	
도로	중로2-144	광로3-6	대로3-40	123	15-18	43	
	중로2-11	대로2-14	중로2-144	8	8	9	
	청량로242번길	중로2-144	옥련동 271-1번지 일대	86	6	51	건축선 후퇴
	소계			217		103	
주차장		옥련동 286-4번지 일대		55			
공원(소공원)		옥련동 286-3번지 일대		395			
총 계				667			

■ 변경

구 분	명칭	위 치		규모(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)			비고
	류번-번호	시점	종점	면적(㎡)	폭원(m)	연장(m)	
도로	중로2-144	광로3-6	대로3-40	123	15-18	43	
	중로2-11	대로2-14	중로2-144	8	8	9	
	청량로242번길	중로2-144	옥련동 271-1번지 일대	86	6	51	건축선 후퇴
	소계			217		103	
주차장		옥련동 286-4번지 일대		71			
공원(소공원)		옥련동 286-3번지 일대		379			
총 계				667			

6)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계획 - 변경

결정 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	
	명 칭	면적(㎡)	명 칭	면 적(㎡)							
기정	옥련대진 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8,548.0	1-1 (공동주택)		7,881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5% 이하	244%이하	78m이하		
			1-2 (주차장)		기정	55.0	주차장	-	-	-	
					변경	71.0					
			1-1 (공동주택)	허용 용도	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·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						
				불허 용도	·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		
			1-2 (주차장)	허용 용도	·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불허)						
				불허 용도	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		
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			·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% 이상을 전용면적 85㎡ 이하로 건설								
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			·임대주택 건설비율 0% 적용 ·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-164호에 의거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입주 수요 반영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								
			구분	위치			계획내용	계획목표		비고	
			건축 한계선	1-1	중로2-144, 소로2-11호선변		폭 3m지정	·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			
					인접 대지경계선변		폭 3m지정				
	1-2	소로2-11호선변		폭 3m지정							
완화기준적용			·용적률 : 완화(인센티브) - 공공시설 부지제공(24.02%) + 지하주차장 확보(10.0%)								

7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구분	계 획	비고
환경보전 계획	☐ 토양포장 -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☐ 우수유출 -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,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-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, 내구성,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, 질감,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☐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-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(도로,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, 철도 등)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-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,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☐ 먼지 - 공사 건물과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설시 및 차량 진·출입구에 세륜·세차시설 설치 -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☐ 폐기물 -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-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-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, 사업장폐기물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☐ 소음 - 공사 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,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-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-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	
재난방지 계획	☐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-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,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-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-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☐ 수해대책 -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 처리방안 계획수립	

8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교통처리에 관한 계획	-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-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-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,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	
보행동선에 관한 계획	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	
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	-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,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-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남측 옥련중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200m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 및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학습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음	

9)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- 변경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	비고
			구분	획지 번호	위치	면적(㎡)	
1-1	1	8,331.0	기정	1	연수구 옥련동 271-17번지 일원	7,881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1-2			기정	2	연수구 옥련동 286-4번지 일원	55.0	주 차 장
			변경			71.0	
1-3			기정	3	연수구 옥련동 286-3번지 일원	395.0	소 공 원
			변경			379.0	

※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

10)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- 변경

■ 기정

구 분	세대수	비 율	비 고
전체 세대수	220	100.0%	-
임대주택	0	0%	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164호에 의거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입주 수요 반영

■ 변경

구 분	세대수	비 율	비 고
전체 세대수	218	100.0%	-
임대주택	0	0%	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164호에 의거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입주 수요 반영

11)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- 변경 없음

- 시행방법 :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
- 시행예정시기 : 「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

12)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- 해당없음

13)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- 변경없음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상습침수구역 현황	·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 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	
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	·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	
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	·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·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	

14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- 변경없음

구 분	활 용 계 획	비 고
-	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	-

15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-	1-1, 1-2	대지 안의 조경	· 대지안의 조경에는 가로 녹화, 가로 및 지구의 경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 및 시설을 정할 수 있음 · 대지안의 조경은 도로변으로 이격거리를 통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함
		전면 공지	· 남측 소로2-11호선변 폭 2m를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·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인도로 식별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 재료 및 패턴사용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 금지

② 교통처리계획

도면 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-	1-1, 1-2	·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지정 ·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·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	

③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

-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
 - 향후 관련절차이행 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(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)】 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 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

④ 학교 신·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

-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·증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교육재정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

16) 관련서류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(관련도면 게재 생략)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9-53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3-2호선) 실시계획 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3-2호선)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건설과(☎749-8525) 및 도시계획과(☎749-865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9. 4. 22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사업 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1-4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3-2호선)
- 명 칭 : 간도장지구 소3-2호선 도로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소로	3	2	6	국지	180	광2-6	소3-1	일반 도로	-	인고 06-98 (2006. 6. 5.)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(예정)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(예정)일 : 2020. 12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
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- 「붙임」 참조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
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해당 없음

용 지 조 서

고시 일련 번호	동명	지번	지목	공 부 (㎡)	편입면적(㎡)		잔여 (㎡)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	도로내	도로외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1	선학동	131-4	전	224.0	224.0	-	-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*7	진*근			
2	선학동	120-27	전	7,172.2	-	168.0	7,004.2		인천광역시			
3	선학동	131-3	전	98.0	98.0	-	-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*3	김*천			
4	선학동	137-4	전	2,607.8	45.0	69.0	2,493.8	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*2 인천광역시 미추홀로 문학동 8*-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*5	정*연 이*자 정*천			
5	선학동	328-48	도	456.8	387.0	37.0	32.8		국토교통부			
6	선학동	137-1	전	430.0	60.0	41.0	329.0	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*9-*	오*남			
7	선학동	137-9	전	363.0	57.0	55.0	251.0	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*9-*	최*한			
8	선학동	137-10	전	363.0	36.0	48.0	279.0	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*9	최*현			
9	선학동	137-11	전	354.0	21.0	29.0	304.0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*5	최*애			
10	선학동	130	전	512.8	168.0	39.0	305.8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*3	신*태			

지장물조서

고시 일련 번호	동명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단위	수량	소 유 자		비 고
							주 소	성 명	
1	연수구 선학동	120-4	철크스	그물	m	28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-*	김*희	
2	연수구 선학동	137-10	철크스	그물	m	92	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*9	최*현	
			물탱크	PE	EA	1			
			창고	샌드위치판넬	m ²	6			
3	연수구 선학동	130	철크스	노끈	m	35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*3	신*태	
			교목	감나무, R15	주	11			